

청주지방법원 2024. 6. 21 선고 2024나50678 판결 [건물명도 등]

재판경과

청주지방법원 2024. 6. 21 선고 2024나50678 판결

청주지방법원 2023. 5. 18 선고 2022가단7600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A조합

피고, 항소인 C

변론종결 2024. 5. 17.

판결선고 2024. 6. 21.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23. 5. 18. 선고 2022가단7600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22. 11. 22.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492,917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소장부분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4660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제1심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부분 및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한 후 2023. 5. 18.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제1심판결 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23. 12. 28. 판결정본을 발급받고, 2024. 1. 10.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사정이 이와 같은 이상,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청구의 당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22. 11. 22.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고, 피고는 현재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함으로써 그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2022. 11. 22.부터 이 사건 아파트 인도완료일까지 월 492,917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2022. 11. 22.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및 제1심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23. 12. 20.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집행이 완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과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제1심법원은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의 주소지로 하여 이 사건 소장의 송달을 실시하였으나, 2023. 1. 6.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고, 같은 주소지로 여러 차례 집행관 송달을 실시하였으나 2023. 3. 3.까지도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점, ② 피고는 2023. 12. 27.경 제1심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집행 하였다는 내용의 인도집행종료통지서를 현재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전남 목포시 L, M호’에서 송달받은 점, ③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제3호증)에 따르면 피고가 2022. 2. 28.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 하였다가 2023. 5. 25. 현재의 주민등록지로 전입신고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오히려 주민등록초본의 병역사항 기재 및 재학증명서와 학적부(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현 주민등록지 인근 전남 영암군 소재 N대학교의 학생으로서 2021. 11. 22.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한 이후 2022. 2. 14. 복학하여 2022년에 2학년, 2023년에 3학년 과정을 각 마치고 2024년 현재는 4학년에 재학

중인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④ 이 사건 아파트 내에 피고 소유의 물건들이 보관되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찾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부동산인도집행조서(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제1심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인도집행이 이루어진 2023. 12. 20. 당시 이 사건 아파트는 공실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2022. 11. 22.부터 그 인도집행이 완료된 날까지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와 반대의 전제에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 인도 및 그 점유에 따른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미리, 판사 박성준, 판사 이효선

별지